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	총무과

(2017. 9. 22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유 준 상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15일(금)
- 제출자 : 이학래 의원 외 9명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9월 18일(월)

4. 관계법규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5. 제정이유

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, 방법,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.

6. 주요내용

-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·운영 등 기본원칙
(안 제4조)
-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범위 (안 제5조)
-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절차(안 제6조)
- 장애인공무원 지원방법(안 제7조)
-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8조)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
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, 방법,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상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우리구의 2017년도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중증 20명, 경증 49명 등 합69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5번째로 장애인수가 많고 앞으로, 장애인공무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

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마포구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및 맞춤형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무능률을 향상 시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관 계 법령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8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(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)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5.1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5.18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5.5.18.>

○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6.4.>

1. "장애인"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2. "중증장애인"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